Special Olympics Korea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대회 규정

2014.04.04.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제 4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 동(하)계 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전국대회에 관한 권리) 본회는 전국대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와 중계방송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

제 3 조(대회회수) 전국대회는 2000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 1 회 대회부터 회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는 회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4 조(대회구분) 전국대회는 하계, 동계대회로 구분하며, 하계대회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 하계대회」라 하고, 동계대회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 동계대회」라 한다.

제 5 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전국대회는 계절별로 매년 개최하되 하계대회는 8월중에, 동계대회는 2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 시 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최 월을 조정 할 수 있다.
②대회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동·하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가 개최되는 년도 또는 및 지역종합경기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년도에는 해당 계절의 전국대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 조(경기행사제한) 전국대회의 개최일 5일전부터 종료일까지 본회지부 및 중앙경기단체와 그 산하연맹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대회상징마크) ①전국대회 상징마크는 본회가 정한다.
②상징마크는 SOI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회 상징마크 활용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대회표어) ①전국대회 표어는 2013년 제 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때 처음 채택된 "Together We Can"으로 한다.
②전국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본회는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 체육대회가 등의 사용에 대하여 본회가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회엠블렘,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조직위원회는 대회홍보 및 대회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회엠블렘,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대회엠블렘 등에 관한 권리 및 사업) 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을 받은 대회엠블렘,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의 모든 권리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회종료 시까지 조직위원회가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다만, 이를 활용하여 휘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휘장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본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회 종료 후 대회엠블렘,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에 관한 모든 권리는 본회에 귀속되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전국대회 위원회

제12조(설치) 본회 정관 제35조 8항에 의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전국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사업)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전국대회 개최지의 타당성 검토
2.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사업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경기종목, 종별 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여 시행하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정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종합사업계획서 변경에 관한 사항
3. 세부종목의 시범, 정식 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참가요강에 관한 사항
5. 세부시상의 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소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국대회 유공자 포상 심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본회에서 요청하는 일반적인 사항

제1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1인은 개최지위원) 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은 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국대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15조(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본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 된다.

④ 위원회 출석을 연속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해당위원의 자격은 자동 소멸한다.

제 3 장 종합사업계획

제17조(종합사업계획서의 승인) ①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전국대회규정에 의하여 대회유치가 결정된 시·도는 적어도 대회개최 6개월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종합사업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 하여야 한다.

1. 각 경기장의 시설현황(장애인편의시설 포함)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 사용 계획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 및 확보방법
4. 선수단의 숙소(장애인편의시설 포함) 및 수송계획
5. 기타 대회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개·폐회식 경기장이 소재하는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숙소 및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종합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기운영, 숙소운영, 수송운영 및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방문 실사에 의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개최 시·도는 전국대회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전국대회 본회의 승인조건과 전국대회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대회조직위원회

제18조(설치)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지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이하"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사무처를 두어야 한다.

제19조(구성시기) 조직위원회는 전국대회 개최 6개월 이전에 구성하여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0조(임원구성)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제23조에 명시한 부서를 포함 하여야 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인
3. 위 원 약간인
4. 간 사 약간인

제21조(임원의 선출방법) 위원장은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시·도 지부 회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최 시·도 관련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겸한다.
2.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 부 단체장, 부교육감 및 개최 시·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시·도지부 임원을 포함하여 조직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23조 (사무처구성 및 운영) ① 조직위원회의 실무부서는, 경기부, 공식행사부, 의전초청부, 인력물자부, 홍보부, 자원봉사부, 입퇴장관리부, 안전관리부(질서포함), 교통경비부, 숙소운영부, 시설지원부, 수송운영부등 개최지 실정에 알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과장급으로 하며 실무직원을 담당으로 둔다.

제24조(개최지역운영위원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준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최지역 내의 관계자로 구성된 개최지역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위원장은 개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그 지역의 부 단체장, 해당지역 경찰서장, 한국스페셜올림픽 시·도 지부 부회장 및 기타인사로 한다.
3. 참여는 해당지역 경기단체회장 및 기타 인사로 한다.
4. 간사는 해당지역 한국스페셜올림픽 지부의 사무처장(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5. 운영위원은 해당지역 한국스페셜올림픽 지부의 이사, 감사 및 기타 인사로 구성한다.

제25조(해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개최지역운영위원회는 전국대회 준비기간 및 대회기간 중 계속 활동하며 대회 종료 후 이를 해산 한다.

제 5 장 대회참가

제26조(예선대회) 본회의 각 시·도지부는 전국대회 참가 시·도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참가신청) 시·도별 대표로 선발된 선수 및 팀은 대회참가요강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해당 시·도지부장이 본회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대회참가) 전국대회는 본회의 각 시·도지부 단위로 참가하여야 하며 각 중앙 경기단체 선수등록규정 및 대회참가요강의 적용을 받는다.

제29조(참가요강) ①전국대회의 일반사항, 시상, 참가자격, 경기종목별 참가는 본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전국대회 참가요강은 대회개최 전년도에 전국대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회의 종목별 경기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경기방법) 전국대회의 경기방법은 SOI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경기종목

제31조(경기종목) 전국대회의 경기종목(정식종목)은 국제기구에서 승인한 종목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제32조(시범종목의 운영) ①본회가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종목에 대하여 전국대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범종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범종목참가는 제27조, 제28조, 제29 규정에 의거한다.

제33조(유니파이드 종목의 운영) 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유니파이드 종목은 본회가 개최지와 협의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세부종목) 각 경기종목별 세부종목은 제29조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35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전국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이를 결정 한다. 다만, 경기종목 별 세부 경기종목 및 종별, 시범종목, 유니파이드 종목은 전국대회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제36조(경기운영) 전국대회의 모든 경기는 중앙경기단체(또는 중앙의 종목별분과위원회)의 경기규칙에 의하되, 본회의 규정(대회참가요강 포함) 및 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제37조(단체구성) 개인경기단체전 및 단체경기종목의 단체구성은 제29조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38조(경기운영방법) 전국대회 경기종목의 경기방법은 해당 종목별경기 단체(또는 종목별 분과위원회)의 경기 방법에 의하되, 대진방법은 디비저닝, 파이널로 한다. 다만, 경기의 특성 상 경기방법을 달리할 경우는 종목별 경기 기술위원의 결정에 따라 경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9조(일정 및 대진추첨) ①종목별 경기일정은 각 종목별경기단체(또는 종목별 분과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가 결정한다.

② 대진은 각 시·도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가 결정하며, 각 경기단체(또는 종목별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

제40조(경기심판) ①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소청은 해당 경기종목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 해당 경기종목 심판부장의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거나 기타 판결되지 않은 심판 판정에 대한 사항은 경기본부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41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조직위원회는 전국대회 경기종목 별로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도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 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 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본회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안)과 함께 경기장의 조명, 안전망, 차광막, 관중수용 능력, 바닥재의 상태, 득점판 등의 경기진행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비품 등을 명시한 각 경기장별 도면을 대회개최 6개월 전까지 본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경기단체의 사용 확인과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경기장 규격) 조직위원회는 해당 경기종목의 국제경기규칙 또는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규격과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수용인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하게 배정하고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3조(시설 및 경기 용기구 등) 조직위원회는 본회 및 중앙경기단체(또는 중앙의 종목별 분과위원회) 규정에 의한 경기시설 및 경기 용 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경기장 출입신분증) 조직위원회는 본회와 협의한 후 대회임원, 경기임원, 참가선수단 및 준비 관계자,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8 장 시상

제45조(시상구분) 전국대회의 시상은 단체상과 개인상으로 구분하며, 별도 시상 내규에 의한다.

제46조(시상방법) ① 1, 2, 3위는 메달을 수여 하며, 4 ~ 8위 까지는 해당 등수의 리본을 수여 한다.
② 대회규정에 의하여 실격 처리된 선수는 참가리본을 수여 한다.
③ 기타 시상에 관한 규정은 별도 내규에 의한다.

제 9 장 주최기관의 대회임원

제47조(임원구분) 전국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경기단체임원, 개최지집행임원, 개최 지역 운영위원회 임원, 경기장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48조(대회임원) ①대회임원은 본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 한다.
②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회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명예대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 부대회장은 본회 부회장으로 한다.
4. 고문은 본회 고문으로 한다.
5. 임원은 원로체육자문위원, 참가 중앙경기단체장,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국장, 개최 시·도 종목별경기단체장 및 각급 기관장(30명 이내)으로 한다.
6. 집행위원장은 본회 사무총장으로 하며, 집행부위원장은 본회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7. 집행임원은 본회 이사, 감사, 전국대회위원회 위원, 본회 부장급이상 간부직원, 개최 시·도체육회 부회장, 이사, 감사, 개최 시 도 광역자치단체의 각 국장, 교육청 각 국장, 지방경찰청장, 개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한다.
8. 소청심의위원은 위원장에 전국대회위원회위원장, 위원에 본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전국대회위원회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9. 경기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49조(경기단체 임원) 전국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본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당해 경기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50조(개최지집행위원 및 개최지역 운영위원) 개최지역 집행위원 및 개최지역

운영 위원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제10장 개·폐회식

제51조(초청) ①개·폐회식 초청범위 및 초청석 운영은 개최 시■도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개·폐회식 초청은 본회의 회장 및 조직위원장 공동 명의로 한다.

제52조(개·폐회식일정) ①개회식 일정은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폐회식은 전국대회 최종일 경기종료 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①개회식은 식전공개행사, 공식행사 및 식후공개행사로 구성한다.

② 개회식의 식전 및 식후공개행사는 조직위원회가 개최지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개·폐회식 공식행사는 본회가 이를 진행한다.

제54조(개·폐회식 운영계획) ①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국대회 개최 6개월 전까지, 세부행사계획은 2개월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개·폐회식 운영계획은 본회의 개·폐회식 운영요령에 의한다.

② 조직위원회가 개·폐회식 행사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행사업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 하고자 할 경우 본회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 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식순의 변경이 필요할 시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전국대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개회식 식순	폐회식 식순
내빈 입장	개식통보
개식 통보	선수단 입장
선수단 입장 통보	성적발표
선수단 입장	선수인사
국기에 대한 경례	폐회사

애국가 제창	대회기 강하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회기 전달
개회선언	차기 개최지 홍보영상
선수인사	환송사
환영사	폐회선언
대회기 게양	성화 소화
성화점화	
개회사	
치 사	
선수, 심판 대표 선서	
선수단 퇴장	

제56조(개·폐회식 사용음악) ①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공개행사 시에 필요한 공식음악을 직접 연주 또는 녹음 음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곡 및 묵념곡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③ 귀빈입장 시의 음악, 팡파르 음악은 본회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된 곡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수단 입장 시 연주되는 음악은 행진하는 선수단이 절도 있고, 질서 있는 행진대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에 맞는 음악을 사용하되, 동일 연주대의 음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7조(입장대형) ①개회식의 입장 행진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대회 표식판, 스페셜올림픽코리아기, 총지휘자, 전국대회기, 기수단, 참가 시·도 선수단, 심판단, 자원봉사자 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선도악대 행진대형으로 입장할 수 있다.

② 각종 표지판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하며 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을 갖춰야 한다.

③ 시·도 표지판에는 시·도지부명을, 시·도 선수단은 해당 시·도명을 기재하여야한다.

④ 태극기 앞에는 어떠한 퍼레이드기도 입장할 수 없다.

⑤ 전국대회기는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7명이 운반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⑥ 기수단은 16개 시·도 표식판, 중앙경기단체기, 16개 시·도 지부기를 들고 행진하여야 한다.

제58조(선수단 입장)
①각 시·도 선수단의 입장대형은 시·도 표지판, 기수, 지휘자, 선수단의 순서로 구성된다.
②시·도표지판 요원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하며, 기수는 해당 시 도선수단 중 1인으로 한다.
③선수단 입장순서는 차기개최지가 첫 번째로 입장하며, 이후 개최지에서 거리가 먼 순서로 입장하며, 맨 마지막에 개최 시·도 선수단 및 심판단 순으로 한다. 다만, 선수단 정열대형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본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9조(국민의례) 국민의례는 관계법규에 의한다.

제60조(개회선언) ①전국대회 개회선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다.
②"제○○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 동(하)계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가 끝남과 동시에 팡파르 음악을 연주하여야 한다.

제61조(선수인사) ①참가선수를 대표하여 선수가 감사인사를 한다.
②인사말을 하는 선수는 개최 시·도에서 선발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정한다.

제62조(환영사) ①환영사는 개최지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며 3분 이내로 한다.
② 선수단 입장통고는 주 개최지 단체장이 한다.

제63조(대회기 게양) ①전국대회기는 흰색바탕의 중앙에 제7조의 대회 상징마크를 위치케 하여 제작한다.
② 대회기는 개회식 때 주경기장에 게양하며 대회기간 중 계속 게양하여야 한다.
③ 대회기는 폐회식 때 개최지 시·도지사가 대회장에게 반납하고, 대회장은 이를 차기 개최지 시·도지사에게 전달하여 보관케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주경기장 내에 15m 이상의 대회기 게양대를 설치하되 대회기가 지속적으로 휘날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성화) ①전국대회 성화는 개최 시·도의 특성에 따라 채화하여 조직위원장과 본회 회장이 함께 최초 성화주자에게 인계한다.

② 채화된 성화는 전국 또는 개최 시·도의 여건에 맞도록 순회 봉송 할 수 있다.

③ 성화최종주자는 주경기장 내 트랙을 일주한 후 성화대에 점화하여야 한다.

④ 성화는 본회의 독점적 권리이며, 조직위원회는 성화운영계획을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개회사) 개회사는 대회장이 한다.

제66조(선수·심판대표선서) ① 선수 및 심판대표는 참가선수와 심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수대표와 심판대표가 선서할 때에는 참가 시·도 기수단은 선서대를 반원으로 에워싸고 도열하여야 한다.

제67조(행사요원의 선정) ①공식행사요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45일 전까지 선정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수 인사 대표 1인
2. 참가선수대표 2인(남·여)
3. 심판대표 1인
4. 성화최종주자 (인원수는 본회와 협의)

② 성화최종주자는 선수 또는 선수출신인 자를 추천하여 본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폐회식 운영) ① 폐회식은 주경기장에서 최종 경기가 종료된 직후 거행하여야 한다.

② 성적발표는 집행위원장이 한다.

③ 폐회선언은 다음과 같이 개최지의 교육감이 한다. “제○○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 동(하)계 폐회를 선언합니다.”

제11장 중계방송권 및 광고

제69조(중계방송권) ① 전국대회의 개폐회식 및 각 종목별 경기의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 중계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등 녹화 제작물 등에 관한 권리

는 본회가 보유한다.

② 제 1 항에 명시된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의 별도내규 및 협약에 의한다.

제70조(광고 등의 설치) ① 전국대회에 사용되는 모든 경기장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관한 권리는 본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② 경기장내 바닥광고, 펜스광고 및 링, 메트 등에 설치되는 광고는 본회에 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수인식번호표 등에 부착되는 광고도 이와 같다.

③ 경기장내 광고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의 별도내규 및 협약에 의한다.

제12장 소청 및 처리

제71조 (소청심의위원회) 전국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소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2조 (참가금지) 전국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중도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본 대회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제73조 (규정준수의무) ① 조직위원회 등 전국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해당단체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